

1. 개정 이유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56조의3, 안 별지 제23호의3서식)

-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별지 서식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 * (현행) 제56조의3~제56조의5 → (개정) 제56조의4~제56조의6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3. 00. ~ 05. 00.)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를 각각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6까지로 하고,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개월	
보상선택		[] 유족보상		[] 행방불명보상			
재해 선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연월일			사망연월일/행방불명연월일			
보상제한 심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관계	사망자의 ()					
선박 정보	선박명				선박톤수		
	선박소유자				업종		
	선원수		한국인 (명), 외국인 (명)				
	재해보험사업자						
신청인 (선박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주소(우편물 수령지)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e-mail							
유족	③유족 청구자	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족대표자여부	
		1			-	[]	
	유족 현황	2			-	[]	
		3			-	[]	
		4			-	[]	
		5			-	[]	
④ 신청 이유	[작성 방식] 보상제한 심의대상자가 사망한 선원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나 배경,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시점포함)과 정도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사용 가능)						
「선원법」 제10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 지급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선박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재해를 입은 선원의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상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사망자와의 관계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기재하십시오.
2. ②란은 급여제한 관련 안내를 위해 반드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3. ③란은 선박소유자(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상 제한을 청구한 유족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4. ④란은 보상제한심의대상자가 선원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나 배경,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시점 포함)과 정도 등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1.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재해를 입은 선원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첨부서류 안내

유족 신분확인	1. 선원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등 - 조부모 : 망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 양부모·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2.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을 첨부
양육책임 이행여부	3.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예시) 각 1부. ① 주소를 같이 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②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등 ③ 선원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사소송 판결문 등) ④ 기타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망자의 유언, 형제자매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6조의3(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제56조의3 ~ 제56조의5 (생 략)</u>	<u>제56조의4 ~ 제56조의6 (현행 제 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와 같음)</u>